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76 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6조제1항제1호나목).

법률 제 호

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	제6조(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
등록 등) ① 이중상환청구권부	등록 등) ①
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	
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	
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	
1. 발행계획에 관한 사항	1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자본금, <u>대차대조표</u> 등	나 <u>재무상태표</u>
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	
관 요건에 관한 사항	
다. ~ 마. (생 략)	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